

2008.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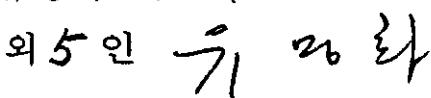
수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유영화 의원 (서명또는 날인)
외 5인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 의원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직위 |
|------|---|----|
| 이기수 | 이기수 | |
| 조덕희 | 조덕희 | |
| 김영선 |  | |
| 신재장 |  | |
| 김병동 |  | |
| 성명중 |  | |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 | |
|------|------|
| 의안번호 | 1236 |
|------|------|

발의연월일 : 2008. 3. 4.
발 의 자 : 유영화 의원외 5인

1.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하고, 포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7조)
-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
-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의 재원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9조)

3. 관련법규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제정 2005.12.16 환경부예규제267호]

붙임 1.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1부.

2. 관련법규 1부. 끝.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일반 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신고의 접수는 신고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먼저 연락받은 시의 환경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부서의 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대장을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하며(당직근무일자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당직자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다음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영무 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가 관장하는 배출업소가 아닌 다른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접수된 환경오염신고사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① 시장은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2. 이미 조사·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신문·방송 기타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② 기타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시의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 구 分 | | 포 상 금 | 비 고 |
|--------------|-------|---------------------------------------|------------------------------|
| 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 | 2년 미만 | - 200만원 | |
| 벌 금 형 | |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 선고유예 | | - 20만원 | |
| 기소유예 | | - 10만원 | |

2.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 행 정 처 분 명 | 포 상 금 | |
|-----------------------------|------------------------|----------|
| | 최 고 | 최 저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 300,000원 (500,000원) | 100,000원 |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200,000원 (300,000원) | 50,000원 |
| 경고, 개선·시정 명령 | 100,000원 | 30,000원 |

주) 최고 칸의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4. 중복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 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 비고. 1.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신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포상금
을 지급한다.

環境犯罪의 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第15條 (賞金)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發覺전에 搜查機關 또는 環境部長官, 地方環境官署의 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통보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제10조 (상금의 지급)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267호 2005. 12.16)